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

• 색상이 어누운	난은 신성인이 4	박성하시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 ⁷	가는 곳이	ᅦ √ 표시들 압니다.				(앞쪽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일	일자		처리기간	7일	
① 건축주	성명(법인명)			생년월일(사업자	또는 밭	 ქ인등록번호	<u>-</u>)	
	주소			(전화번	호:)	
	전자우편 송달동의	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 송달에 동의합니다.	라 정보	통신망을 이용한	각종 부	담금 부과 시	H전통지 등의	문서
		[] 동의함			[] 동의하지	 않음	
					건축주		(서명 또	는 인)
		전자우편 주소			@			
② 설계자	성명			자격번호				
		(서명 5	E는 인)					
	사무소명			신고번호				
	사무소주소				(전화	번호:)
③ 공사 개요	대지위치							
	지역지구			층 수				지히 지싱
	대지면적		m	건축면적				m²
	건축연면적			구 조				
	용 도			건축허가일 /허가번호				
「건축법」	제25조제2형	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	≦의2제	3항 및 같은 법	넓 시행	규칙 제193	조의3제1항	에 떠
라 위와 같0	공사 감리지	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						
						년	월	잍
				건축주			(서명 또	E는 인)
특별시장		앙・특별자치시장・특 장・군수・구청장	별자	치도지사, -	귀하			

근 거 법 규

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

-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 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.
 - 2.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으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유의 사항

-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 물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건축주가 건설업자이면서 공사시공자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)인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

